벌금, 정직 또는 취소에 대한 항소 제기

1. 주류 판매 라이선스에 대하여 벌금,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내린 비즈니스 업무 및 소비자 보호 부서(Department of Business Affairs and Consumer Protection, BACP)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비즈니스 업무 및 소비자 보호 부서의 벌금,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일을 기점으로 20일 내에 라이선스 항소 위원회(License Appeal Commission, LAC)에 제출해야 합니다. **명령일을 기점으로 20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결정에 항소할 권리는 소멸됩니다.** (참고: 라이선스 항소 위원회는 시카고시 법무부에서 발행한 공식 공휴일 일정을 따릅니다.)

2. 비즈니스 업무 및 소비자 보호 부서에 항소하기 위하여, 라이선스 소지자는 라이선스 항소 위원회에 특정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라이선스 소지자는 항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문서 아래 항소 통지서 참조).

   B) 비즈니스 업무 및 소비자 보호 부서의 사실 확정, 벌금, 정지 또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 취소 처분 명령의 명령서 사본을 항소 통지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C) 접수 수수료 $125의 납부를 증명하는 매장(Point of Sale, POS) 송장과 현재까지 요구되었던 라이선스 수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거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D) 법원이 비즈니스 업무 및 소비자 보호 부서에서의 법적 절차 녹취록을 보고하였음을 명시하는 공증 진술서가 있어야 합니다.

3. 라이선스 소지자는 항소를 위해 재무 부서에 수수료 $125.00를 납부해야 합니다. POS 송장 양식은 본 부서 웹사이트(www.cityofchicago.org/la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시카고시 결제 센터에서 수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라이선스 항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이 없는 경우 항소는 접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라이선스 소지자는 또한 비즈니스 업무 및 소비자 보호 부서의 결정을 파기하기 위하여 변론 시 라이선스 소지자가 의지하는 모든 판례법 또는 법령을 포함해야 합니다.

5. 주류 판매 라이선스 소지자는 라이선스 항소 위원회에 항소를 접수한 이후 법원이 보고한 비즈니스 업무 및 소비자 보호 부서의 녹취록이 이행되었음을 명시하는 공증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는 라이선스 항소 위원회가 항소 통지서에 날인하고 접수한 날짜를 기점으로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라이선스 항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는 기각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업무 및 소비자 보호 부서의 취소 명령에 항소하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 소지자라면 주의 법에 따라 항소 계류 기간 중 주류 판매 라이선스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고 라이선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항소 위원회에 취소 명령을 항소하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 소지자는 현재까지 모든 라이선스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류 판매 라이선스 소지자는 시청 107호 시카고시 재무부에 갱신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납부한 라이선스 갱신 수수료 영수증과 더불어 새로운 항소에 대한 접수 수수료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증은 라이선스 항소 위원회에 항소 접수를 위한 사전 요건의 일환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수는 달력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만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만기일은 그 다음 영업일이 됩니다.

주류 판매 라이선스 항소 성립 요건

(벌금, 정지 또는 취소)

Michelle.Guzman-Flores@cityofchicago.org로의 전자 접수를 권장합니다.
이메일 접수가 여의치 않은 경우 312-744-4095번으로 문의하여 직접 접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접수 전 다음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거부됩니다.

항소 접수 전 다음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거부됩니다.

- 항소 통지서
- 취소, 정지 또는 벌금(사실 확정 동반) 명령서
- 출석 양식
- 접수 수수료 영수증 사본. POS 송장 양식은 현재 부서 홈페이지에 개제되어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시카고시 결제 센터에서 요금을 납부하십시오.
- 주류 판매 라이선스 소지자는 현재까지 **모든 라이선스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소지자는 시청 107호 시카고시 재무부에 갱신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의 사본을 포함시키십시오.

양식은 웹사이트(www.cityofchicago.org/lac)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 (Michelle.Guzman-Flores@cityofchicago.org) 또는 전화(312-744-4095)로 시간을 정하여 인쇄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본을 요청할 예정이라면 영업일 기준(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원 공휴일 제외) 최소 5일 전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자료 수령 시간을 확정하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본 사무소에 항소를 접수하기 이전에 시카고시 결제 센터에 POS 송장 양식을 제출하고 접수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령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소 제출 마감일을 기점으로 10일 이내에 주류 판매 라이선스 소지자는 법원이 보고한 비즈니스 업무 및 소비자 보호 부서의 녹취록이 이행되었음을 명시하는 공증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기각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